#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03

발의연월일: 2024. 10. 16.

발 의 자:김태선・박 정・장철민

이학영 • 맹성규 • 윤종군

한민수 · 박홍배 · 이훈기

정준호 · 김영배 · 김주영

이기헌 • 이용우 • 김태년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ILO와 UN의 협약을 통해 세계 보편적인 노동원칙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이에 따른 평등 대우원칙을 법과 제도에 구현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균등한 처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동일가 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2 신 설 등).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녀의 성(性)을" "남녀의 성(性)·연령·신체조건·인종"으로,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고용형태·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동일가치노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할 때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 1. 기술: 자격증,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수준
  - 2. 노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힘 및 정신적 부담
  - 3. 책임: 업무에 내재된 의무의 성격·범위, 사업주가 해당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 4. 작업조건: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5. 대체가능성: 유사한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의 동일 또는 동종 업무의 수행 가능성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 제6조(균등한 처우) -----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 <u>남녀의 성(性)·연</u>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 령·신체조건·인종-----하고,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고용형태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 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분-----<신 설> 제6조의2(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가치노 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치노동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을 고려할 때 서로 비 교되는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성질인 노동 또 는 두 업무가 다르더라도 직무 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 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 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1. 기술: 자격증,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 의 객관적 수준 2. 노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

리적 힘 및 정신적 부담

- 3. 책임: 업무에 내재된 의무의 성격·범위, 사업주가 해당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 5. 대체가능성: 유사한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의 동일 또는동종 업무의 수행 가능성